

【상주실버빌노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18명

2.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시설급여

3. 입소대상

-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 중 상주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승인하는 자
-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4.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게시판 게시 자료 참조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의 지급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 ⑦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입소자에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퇴소를 요구할 때
- ② 이용자가 시설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③ 이용 당시의 사유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 ④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 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③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거나 촉탁 의사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 및 촉탁의 진료

- ① 상주실버빌노인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② 촉탁의 의사가 한 달에 2번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

- ①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2.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실버빌노인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며 가입기준을 준수한다.(입소자 정원기준 보장 가입)
- 2.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 3.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 대상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시설의 장(원장), ② 시설거주자 대표, ③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④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사회복지공무원(관계공무원), ⑥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기타 공익단체 추천인,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고하며,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④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⑤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⑥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